

## □ 전문

### 「국제대학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지침」

제정 2019. 7. 18.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「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본부 규정” 이라 한다)에 따라 국제대학원 비전임교원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채용계획과 모집분야)** ① 각 전공의 주임교수는 비전임교원의 신규채용이 필요한 전공(교과)분야가 있을 경우 교무부원장(학과장)을 거쳐 원장에게 신청한다.

② 원장은 국제대학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채용이 필요한 전공(교과)분야, 강의 교과목, 직명, 인원, 임용기간 등을 확정한다.

**제3조(채용방법 및 신규채용절차)** ① 신규채용은 본부 규정 제5조를 따른다.

② 공개채용을 위한 최초 공고기간은 1주 이상으로 하며,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정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.

③ 비전임교원의 재임용은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3년 범위에서 한다.

**제4조(접수서류)** 신규채용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공개채용지원서
2. 졸업·학위증명서(대학 및 대학원)
3. 경력증명서
4. 자기소개서
5. 교육(연구) 계획서

**제5조(심사항목 및 배점)** 신규채용을 위한 심사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,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#### 1. 1차 서류심사 (80점)

- 모집대상 전공(교과)분야와의 적합성 (20점)
- 전문경력 (20점)
- 강의·연구경력 (20점)
- 자기소개서 및 교육(연구)계획서 (20점)

#### 2. 2차 면접심사 (20점)

**제6조(심사위원)** ① 교무부원장(학과장)은 해당 전공(교과)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5명 이상을 추천하고, 원장은 이 중 3명을 지명

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. 1차 및 2차 심사위원은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심사방법)** ① 각 심사위원은 [별표1,2]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, 심사위원별 평균점수를 취득점수로 한다.

② 서류평가 80점 만점 중 60점 미만 취득자는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한다.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국제대학원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.

**제8조(임용후보자 추천)** ① 원장은 심사 결과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.

② 채용후보자가 임용예정일 이전에 임용을 포기할 경우 적격자 중 후 순위자를 추천할 수 있다.

**제9조(인사위원회 심의)** 인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제출 서류와 각 단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규채용, 특별채용 및 재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. 또한 본부 규정 및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반사항을 정한다.

**제10조(특별채용)** ① 본부 규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전임교원을 특별채용 하고자 하는 전공에서는 특별채용 사유서, 채용(교과)분야, 인원 등을 명시하여 교무부원장(학과장)을 거쳐 원장에게 신청한다.

② 특별채용의 경우 공고를 생략하고 전공주임의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접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공주임은 임용추천서, 활용계획서, 이력서, 졸업·학위증명서(대학 및 대학원), 경력증명서, 자기소개서, 교육(연구)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추천한다.

③ 그 밖의 심사는 본 지침의 공개채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.

**제11조(재임용)** ① 비전임교원을 재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전공의 주임교수는 (재)임용추천서, 활용계획서 등 재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직전 2개 학기 강의평가 평균이 3.0 미만인 경우 재임용을 추천할 수 없다.

② 재임용 심사위원의 구성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.

③ 인사위원회 위원은 재임용추천서, 활용계획서 등을 토대로 심의하여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 시 재임용 적격으로 한다.

**제12조(그 밖의 사항)** ① 비전임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한다. 계약서는 본부 규정 별지 서식을 활용한다.

1. 임용기간

2. 강의시간(강의를 담당할 경우)

3. 임금 및 지급방법
  4. 복무 등 근무조건
  5. 면직사유
  6. 그 밖에 계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
- ② 비전임교원은 공동연구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부 규정을 따르거나, 국제대학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<2019.7.18., 교수회 의결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폐지규정)** 「국제대학원 겸임교원 등 비전임 교원 임면 및 운영세칙」은 폐지한다.

**제3조(적용례)** 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채용 되는 비전임교원(해당 비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기 위한 절차 포함)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비전임 ( )교원 신규채용 서류심사 평가표

국제대학원

채용분야 (채용인원)	( )	성명	생년월일	· · · (만 세)	
구분 평정영역 (평가비중)	평가기준		평가배점	평가점수	비고
모집대상 전공(교과)분야와의 적합성 (20)	완전일치		16~20		
	부분일치		6~15		
	상당불일치		0~5		
	소 계		20점		
전문경력 (20)	10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		16~20		
	3년 이상 10년 미만의 관련 분야 경력		6~15		
	3년 미만의 관련 분야 경력		0~5		
	소 계		20점		
강의·연구경력 (20)	10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		16~20		
	3년 이상 10년 미만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		6~15		
	3년 미만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		0~5		
	소 계		20점		
자기소개서 및 교육(연구)계획서 (20)	교육 및 연구의 목표, 교육 기법 등 종합평가		0~20		
	소 계		20점		
합 계			80점		60점 이상
<p>년 월 일</p> <p>평가자 소속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직급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</p>					

[별표 2]

비전임 ( )교원 신규채용 면접심사 평가표

국제대학원

채용분야 (채용인원)	( )	성명		생년월일	(만 세)
심사사항		평가 배점	평가 내용	평가 점수	평가 의견
면접 심사	임용적합성 등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자로서의 자질, 인성, 품위, 전달력, 전문성, 임용적합성 등</li> </ul>		<평가 요지>

년 월 일

평가자 소속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직급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